



협회소식

대전·대구지방 공정거래 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0월 18일과 10월 19일 대전·충청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유통업체 및 하도급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지방 교육에는 대전지방사무소 소비자보호과 임원택 과장과 경쟁과 정영복 과장이, 대구지방 교육에는 대구지방사무소 조용광 소장과 경쟁과 조성래 과장이 각각 강사로 초빙되어 지역별로 관련 업체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및 사례, 하도급법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거래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공정거래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정거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회원사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신팔식 선임연구원이 재벌개혁과 공정거래정책을, 공정위 국제업무2과 김원준 과장이 공정거래정책의 추진현황 및 과제를, 독점정책과 장득수 서기관이 독과점 규제와 대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소비자기획과 박재규 서기관이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를, 경쟁촉진과 송하성 과장이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법 분야와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방향과 각종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분임토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경제와 재벌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신팔식 박사는 기존의 재벌정책이 기업구조와 행태의 개





협회소식

선에 있어 그리 유효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재벌개혁문제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쟁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기업행위의 경제적 목적이나 효과와 무관한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저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경영권 독점이 있는 만큼, 재벌정책이 경쟁의 촉진을 통해 독점을 제거·축소하고 독점적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그 정책적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효율적인 기업과 경영자는 도태될 수 있으므로, 경쟁적 시장환경과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 사업영역과 활동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재벌 구조와 형태의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에 대해 김원준 과장은 공정위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조기에 균절시킬 계획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0년 4월 재도입하여 계열시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계열확장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한 독과점 구조와 경쟁제한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독과점화 구조가 장기 고착화된 품목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근절 대책으로 카르텔 적발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국제카르텔 조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억제와 대기업구조조정 대책에 관해 장득수 서기관은 공정위는 경제구조개혁을 위해 기업의 채무보증의 해소와 핵심역량의 집중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차단 등의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2000년 2월에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향후 2년간 연장하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지주회사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30%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 11월말경에는 「지주회사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지주회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과제에 대해 박재규 서기관은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하고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소비자정책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소비자정책 담당부서와 경쟁정책 담당부서의 통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뉴코아,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LG칼텍스가스, LG-EDS시스템, 현대산업개발, 두산, 현대캐피탈, 한화 석유화학, 대우자동차판매, 아남반도체, 삼성SDI, 삼성생명, 에쓰오일, 고려아연, 보성파워텍, 신대양제지,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아시아나항공 등의 공정거래담당 임직원들이 참가하였다.

동 세미나 분임토의에서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

질의 : 국내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뿐이다. 그리고 항공운임은 한쪽 회사가 올리면 다른 회사도 서로 비슷한 율로 따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에도 가격담합(공동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만약 공동행위라고 인정될 경우라도 항공운임과 같이 대중적인 운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는가?

응답 :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동행위에서 예외일 수 없는 담합행위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동조적 가격인상과 같은 경우가 독과점 시장체제에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인 만큼 꼭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율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동조적 가격인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가격이 변동 할 수도 있으므로 동업계간의 정보교환이나 담합(의사의 일치)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리하게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질의 : 포항제철이 민영화되면서 내년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공기업들의 30대 그룹 지정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

응답 : 포항제철이 2001년에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한국통신이나 기타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점들이 있어 2001년에 추가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포항제철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그 계열사들 역시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질의 : 경쟁정책에 있어 시장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카드산업이 인허가에 묶여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알고 싶다.

응답 : 기본적으로 경쟁정책당국의 입장은 모든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물리적인 힘이나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장의 매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카드산업의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관련 분야

질의 : 수급사업자 대표가 1인 이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의 공동대표 중 1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수급사업자의 다른 공동대표 1인이 동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계약사실을 부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하도급법상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다.

응답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중 'Ⅱ. 용어의 정의 5. 임직원의 행위'에 의하면 그 회사의 임직원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바로 그 회사의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곧 하도급법상 행위의 주



협회소식

체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공동대표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대표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상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질의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 중 일정금액을 보증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경우 선금금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응답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의 일정부분을 보증기관에 예치하더라도 이는 원사업자와 보증기관간 약정 사항에 불과하고 보증기관에 예치한 부분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금의 일부이므로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선금금을 예치하는 것과 관계없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 단순구매와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의 범위나 정의에 관한 명확한 구별이 있는가?

응답 :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먼저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 물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그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 물품의 수리업자 등이 그 물품, 즉 완제품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자재 또는 임가공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위탁을 하는 주체(원사업자)는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 이상을 업(그 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를 제조·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원양어업을 하는 사업자가 잡은 고기를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원양업자가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위탁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가 소비용 물품(책상, 의자, 캐비넷)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단순구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제조위탁의 범위에 관한 지정고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질의 : 계속적인 거래로 또는 품목이 다수여서 거래시마다 매번 기재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단가적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가?

응답 : 거래가 계속적이건 또는 단기간이건 상관없이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일, 품명,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계속적 거래 또는 품목이 다수일 경우 일정거래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 : 하도급계약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기재할 사항은?

응답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서에 위탁일과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



협회소식

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없이 일부 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은 불완전한 서면의 교부에 해당하게 된다.

公正거래 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 (02)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公正거래위원회 심결을 분기별로 수록한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을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公正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1집

- 2000년도 1/4분기(2000. 1. 1 ~ 3. 31) 심결 수록. 823면 정도
- 2000년 4월 25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25,000원

▣公正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2집

- 2000년도 2/4분기(2000. 4. 1 ~ 6. 30) 심결 수록. 875면 정도
- 2000년 7월 25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25,000원

▣公正거래위원회심결집 제20권3집

- 2000년도 3/4분기(2000. 7. 1 ~ 9. 30) 심결 수록. 1084면 정도
- 2000년 10월 31일 발간
- 판매가격 : 회원(사) 38,000원, 비회원(사) 43,000원

公正거래 관련 자료에 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02)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시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의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이에 대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본 협회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에는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업무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